

제325회 정례회
2013. 12. 1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3년 12월 2일
- 회부일자 : 2013년 12월 3일

3. 제안이유

- 도지사 선거공약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공약사업 확정 및 관리체계 (안 제3조~제4조)
 - 취임 후 3개월 이내 확정, 확정 후 2개월 이내 세부실천계획 수립
-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안 제5조~제7조)
 -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결과 부진 및 문제 예상 시 시정조치 요구
- 평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안 제8조~제14조)
 - 공약사업 수정·보완사항 심의, 추진실적 평가 등
 - 25명 이내 구성, 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교수 등
 - 전체회의 반기별 소집, 소위원회 필요 시 운영
- 추진실적 공개 및 외부평가 등 (안 제15조~제16조)
 - 공약사업 실천계획, 추진실적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평가 적극 협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공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집, 토론회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지사 선거공약 관리 지침과 충청북도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음
-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곳은 전라남도 1곳이며, 대부분의 경우 훈령이나 예규로 정하고 있음

【시도별 관련 규정 현황】

- ▶ 조 례(1) : 전남
- ▶ 훈 령(2) : 충북, 광주
- ▶ 예 규(6) :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 ※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제주는 별도 규정 없음

- 동 조례안은 현재 2개의 훈령으로 나뉘어져 있는 도지사 공약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도민과의 공개적인 약속인 공약의 이행 의지를 표현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공약사업의 확정 시기 및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하고, 주기적인 추진실적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공약이행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평가를 위해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공개와 외부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사료됨

- 다만, 현행 훈령에는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확정 후 15일 이내에 주관부서 결정하며, 주관부서 결정 후 1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취임에서 계획수립까지 기간이 2개월 반 정도 소요되었으나, 조례안에는 취임 후 최대 5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현행 규정에 비해 공약사업 확정 및 계획 수립 시기를 연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임을 알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에 '충청북도지사'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 현행 훈령 및 타 시도 사례에서도 해당 자치단체장을 명시하였음

- 공약 이행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존의 많은 도정 참여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실적
2.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참고자료 1.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실적

□ 완료·이행사업 : 78개(전체 사업 중 76.5%) * '13. 3/4분기 현재

분야별	계	완료	이행	정상추진	부진	비고
계	102 (100%)	24 (23.5%)	54 (53.0%)	24 (23.5%)	-	-
찾아가는 평생복지	25	4	20	1	-	-
살맛나는 서민경제	13	2	8	3	-	-
농촌도시 균형발전	32	8	13	11	-	-
창의적인 문화예술	16	3	7	6	-	-
참여하는 열린도정	16	7	6	3	-	-

참고자료 2.

충청북도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현황

□ 5개 소위원회 22명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제1소위원회 : 평생복지분과			
심의보	남	충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김영석	남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유영선	여	동양일보 상임이사	
하숙자	여	충북여성연대대표	
제2소위원회 : 서민경제분과			
김동환	남	청주대 경영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고석하	남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박종효	남	일하는공동체 대표	
오경숙	여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제3소위원회 : 균형발전분과			
리신호	남	충북대 농과대학 교수	분과위원장
김영환	남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송재봉	남	충북NGO 센터장	
윤병선	남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미자	여	한국여성농업인충북연합회장	
홍민기	남	충주대 행정정보학과	
제4소위원회 : 문화예술분과			
장준식	남	충청대 관광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오세란	여	(사)예술공장두레 이사장	
임승빈	남	청주대 국문학과 교수	
정삼철	남	충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준길	남	(전)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	위원장
제5소위원회 : 열린도정분과			
남기현	남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분과위원장
이완영	남	영동대 행정학과 교수	
최영출	남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충청북도지사 선거공약 관리지침(현행)	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안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 및 관리체계 (안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사항 확정 : 취임 후 1월 ▶ 주관부서 결정 : 공약 확정 후 15일 ▶ 실천계획 수립 : 추진부서 결정 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사항 확정 : 취임 후 3월 * 주관부서는 공약 확정 시 결정 ▶ 실천계획 수립 : 공약 확정 후 2월
<p style="text-align: center;">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 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약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8개 사항 ▶ 기획관리실장이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 수립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추진실적 점검 등 (안 제6~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국 단위로 분기별, 연도별 점검 ▶ 실국 단위로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 필요 시 매월 보고회 개최 ▶ 실적에 대한 총괄부서의 종합점검 실시 ▶ 필요 시 현지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별 분기별, 연도별 점검 ▶ 주관부서별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li style="padding-left: 20px;">(삭제) <li style="padding-left: 20px;">(삭제) ▶ 필요 시 현지점검, 보완대책 등 시정조치 요구